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농림수산업 분야 전문가회의 결과

I. 회의개요

- 일 시 : 2007.9.18(화) - 9.19(수)
- 장 소 : 중국 상해 WTO Affairs Consultation Center
- 대표단
 - 우리측 : 홍영기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장(수석대표), 박창용 농림부 자유무역협정팀장(공동수석대표), 재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계자 등 15명
 - 중국측 : Chen Ning 상무부 과장(수석대표), Yao Weichin 상해WTO 자문중심 부원장 등 10명
- 제2차 산관학연구에서 일정에 없던 농림수산업 분야 회의가 중국측 제의로 열렸으며, 역시 중국측 제의로 이번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됨.
 - 중국은 제2차 산관학연구에서 우리측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 가운데 농업, 임업, 수산업의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측이 제시한 이들 분야 품목의 특별조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특별회의를 제안하였음.
- 워크숍의 진행은 우선 이번 회의 전에 중국측이 제출한 초안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에 준비하여 제시한 우리측 2차 초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음.

II. 주요 논의 내용

- 한-중 FTA의 효과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급격한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라 우리 농림수산업이 입을 극심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지 않으면 농민 및 어업인들에게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불가능할 것임을 강력히 제기
 - 중국측은 FTA 체결 시 중국의 대한 농수산물 수출 증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중국의 국내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양측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통합보고서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 측이 작성하여 중국 측에 전달한 통합 보고서 초안을 기초

로 중국 측이 추가 의견을 기재하여 조속히 우리측에 전달하기로 합의

- 제3차 회의(10.23-25, 위해) 전까지 지속적으로 문안을 교환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필요시 제3차 공동연구회의 전달 실무간 별도의 농업분야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보고서 초안의 연구방법 및 작성 방향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합의

- 보고서 체계는 1) 양국의 산업 및 교역 현황, 2) 양국 산업경쟁력 비교, 3) 한-중 FTA의 영향 등으로 구성하되, 최대한 간결하고 균형잡힌 (concise and balanced) 방법으로 서술
- 산업경쟁력 비교는 가격 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비교로 나누어 분석
 - 가격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FAO나 UNCTAD의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비용 및 UPI(수출가격) 지수를 분석하되, 비교 가능한 양국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국 정부 통계도 참고자료로 활용
 - 수출경쟁력에 대해서는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및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활용
- 상품 범위(scope of products)가 상이함에 따라 양측 통계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를 병기하여 사용하되 보고서 각주에 각자의 상품 범위를 명시

○ 반면, 한-중 FTA의 효과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우리측이 농업보고서 초안에 사용한 일반균형분석(CGE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모델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였으며 동시에 여타 분야에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농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보고서 균형상 맞지 않는 점 등을 강하게 제기. CGE 분석을 삭제하고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만을 기술할 것을 주장함.

- 이에 우리측은 CGE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양국 연구기관(KIEP, DRC)이 공동으로 수행한 최선의 분석 방법론인 만큼 중국측의 유보적 입장(reservation)을 각주에 기재한 채로 보고서에 포함시키거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CGE 결과를 병기할 것을 제의함. 그러나 중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III. 평가

○ 우리측이 농림수산업 분야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중 FTA에

대한 국내 지지를 확보할 수 없음을 설명한 데 대해, 중국측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자국의 제조업의 민감성을 제기함.

- 앞으로도 중국측은 우리측이 농림수산업의 민감성을 제기할 때마다 자국 제조업 분야의 민감성을 전략적으로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측이 우리측 보고서 초안의 CGE 결과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실증하는 근거자료임을 감안 기존 입장을 견지하되,
- CGE 모델의 포함 필요성 여부는 제조업 등 보고서 전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우리측의 이익, 결과 값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향후 조치계획(소관 부처 및 연구원) : 제3차 회의 전까지

- 산업 경쟁력 비교 관련, 양측이 합의한 대로 농림수산업 전 분야에서 MCA 및 TSI 지수를 산출하여 통일된 format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
- 통계수치 차이 등 기술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제기구 및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되, 일부 국내통계는 정확한 출처를 명기하여 사용
- 보고서를 간결하고 균형있게 작성키로 합의한 만큼, 우리 보고서 중 중복 서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분석 결과를 집약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

V. 임업분야 검토사항

- 상품 범위에 대하여 WTO 규정을 고려할 경우 단기임산물은 농산물로, 목재류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므로 협상의 편의와 실질적 득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HS code 6단위 기준 임산물 범위 >

구 분	품목 수	품목 범위	비 고
한국 임산물 범위	135	단기 51, 목재류 84	석재류 제외
중국 임산물 범위	204	단기 92, 목재류 112	
양국 공통	108	단기 27, 목재류 81	
한국 포함, 중국 제외	27	단기 24, 목재류 3	
중국 포함, 한국 제외	96	단기 65, 목재류 31	

VI. 향후 일정

- 제3차 회의 : '07.10.23 - 10.25 (중국 위해시)
- 제4차 회의 : '07년 12월 중 (서울)
 - ※ 최종연구보고서는 3차 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문안을 교환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필요시 제3차 회의 전날 실무간 별도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부 록

- 중국측은 중국이 제출한 초안에 대한 연구 방법, 한국측 초안의 연구방법, 농림수산물분야 분석방법, 보고서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중국측 초안의 연구방법
 - 분야 및 상품 분류: 임업, 수산업 등 세 개 분야에 대해 1차 생산품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업의 경우 재배, 축산, 가공등 세 개 분야로 구분하여 모두 7개 소분야로 나눔.
 - 이들 7개 분야 모든 품목을 SITC 5단위 분류에 따라 구분한 후, 해당되는 HS 6단위로 다시 분류함. SITC 2단위 가운데 0-43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1차 생산품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농산품은 가공품으로 분류
- 중국측 초안의 결론
 - 모든 분석모델이 단점이 있으며, 가정 자체가 현실성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정량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 한국과 중국이 모두 농업분야에 있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며 순수입국의 입장임. 따라서 한국의 관세철폐에 따라 중국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임. 그 결과 한국의 공익적인 잉여는 개선될 것임. 또한 한중 FTA는 한국측 가공품 가운데 비교우위품목의 중국수출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중국은 국민 일인당 농업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중국은 국내소비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출 여력은 더욱 제한적임. 한미FTA 타결 이후 중국

농산물 수출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생산비 및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한국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한국측 초안에 대한 의견

- 농림수산에 대해 3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구분기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각 분야별 상품범위를 명시해주기 바람. 양국 간 경쟁력 분석 및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양국의 품목 범위가 같아야 할 것임.
- 품목 분류에 대한 문제로, 한국측 분석은 몇 가지 다른 품목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품목 범위의 정의를 명시해주기 바람.
- 한국측 초안에서 제시되는 중국 자료의 유효성에 대한 것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한국측 초안에 이용된 중국 도매가격은 보편성과 대표성이 떨어짐.
- 생산비용과 도매가격 비교에 관한 것으로 품목의 경쟁력은 이들 두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품질, 브랜드 등 다른 많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며,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제품의 가격은 운송비, 보험,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단순한 생산비와 도매가격의 비교는 중국 제품의 비교우위를 과대평가하게 될 것임.
- 수산부문 UPI지수
- CGE모델에서 타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GTAP 모델은 다양한 무역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데, 이 모델은 규모에 대해 수익불변, 완전경쟁 등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으며, CGE모델 역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음.

○ 중국측 제안

- 분야 및 품목 구분: 동일한 품목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HS 2002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
- 이용 자료: 양국은 정부 및 국제기구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할 것임. 2006년을 기준으로 하되 경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 2002년부터 2006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세 역시 2006년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함.
- 분석방법에 관한 것으로 학문적인 모델의 결과는 최종보고서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1) 이러한 결과는 정책결정의 판단 기준으

로 이용되기 보다는 학문적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2) 공동연구에서 순수한 학문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3) 모델결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4) 보고서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타산업과 농업분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임. 즉 한국 초안의 경우 농업분야의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제조업 분야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초안은 타산업부문 초안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할 것임.

- 최종보고서 구성: 1) 농림수산분야 발전현황, 2) RCA와 TSI에 기초한 경쟁력 분석, 3) FTA에 따른 정성적 잠재적 영향